

○조례운영상 일부미비점을 개선 정비하려는 것임.

나. 개정내용 및 검토사항

○부칙 제2항의 소득할 주민세 기장연장의 건은 지난 95년 정부에서 교육재정확충을 위해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각각 시세 또는 도세 총액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을 '96년부터 '98년(금년도)까지 교육청 전출금으로 지원토록 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이 그 기간을 2000년까지 연장토록 개정됨으로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취지에 따라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원천징수)의 주민세소득할을 7.5%에서 10%로 인상 조정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토록 한 것인데, 관련법의 기간연장으로 부득이 동 관련규정의 적용기간도 200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이번에 10% 적용의 소득할주민세 적용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현행조례 규정대로 둘 경우에는 '99년도에만 양도소득할 주민세에서 198억원, 특별(원천)징수주민세에서 1,536억원 등 총 1,734억원의 세수결손이 예상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교육청 전출금('99년도 1,126억원 예상)과 관련시세수결손(약608억원)에 대한 별도의 세원마련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이번에 기간연장을 하지 않고 현행조례대로 존치할 경우에는 시민의 담세부담이 경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위와 같이 교육청 재정지원 전출금과 시세수 부족예상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없는 한 소득할주민세의 인상세율 적용기간을 2000년 12월 31까지 연장 적용함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고,

○소득할주민세를 100분의 7.5에서 100분의 10으로 인상 조정하는 것은 지방세법 제176조제3항에 의거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상위 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료됨.

○기타 안 제16조제2항 후단의 일부 문안개정은 지방세법시행령 제58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2항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

리하였고,

안 제16조의 제2항중 “재무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개정한 것은 직제개편에 따른 것임.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검토의견

가. 개정조례안 개요

○본 감면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서울특별시 시세의 과세면제 및 경감 등의 불균일 과세와 조건불이행시의 추징 등에 관한 조례로서,

○'98.6.30현재 사회복지, 사회교육시설, 대중교통, 서민주택건설, 지역발전지원 등 5개 분야의 24개항목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음.

나. 주요개정 내용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 내용은
-주치장 시설의 영업개시후 5년이내 매각하는 경우 감면받은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추징사유를 추가하고,
-임대주택에 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하며,
-국가유공자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중 불합리한 부분,
-기타 조례운영상 나타난 용어 정비등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임.

다. 조문별 검토사항

○안 제2조제3항 및 제4조제1항은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이 구입, 사용하는 자동차(1대에 한함)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의 면제규정으로서 현행조례에서는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받도록 하던 것을 「본인을 위하여」로 변경코자 하는 것인데, 이는 현행규정상으로는 면제조건이 범위가 모호하여 본래 목적대로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제3자가 변칙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그 면제대상자를 본인으로 명확히 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규취지상 타당하다고 사료됨.

○안제12조(주차장에 대한 감면)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주차장 설치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 관련법에 의거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이미 면제받은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를 추징토록 한 현행규정에 대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도 이미 면제받은 위 세금을 추징토록 그 범위를 명확히 하되,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주차장용 부동산에 대해서만 적용토록 개정하는 것인바, 이는 정당한 사유없이 5년이내에 주차시설을 매각하는 경우 감면에 대한 추징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법규해석상 다툼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해소코자 하는 것으로서 매우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15조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은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 주택에 대해서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토록 한 현행규정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지방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98.9.21)준칙에 의거하여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토록 하되, 본 조례 시행일 이후부터 1999년 6월 30일 이전에 착공을 하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준공) 또는 등기(잔금지급)하는 경우에 한정적으로 적용토록 하는 것임. 이번엔 60제곱미터 이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에까지 감면 규정을 확대 적용하는 것은 침체된 주택경기 활성화 를 도모할 뿐 아니라, 지난 '98년 6월 30일 동조례 제14조 개정당시 같은 규모의 공동주택 분양시 100분의 25를 감면토록 개정된 규정과 형평성을 고려한 점이 있으나, 세수결손이 크게 우려되는 시 재정 여건 속에서 약13억원으로 추정되는 세수결손에 대한 대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96년도 비과세 감면실적 : 883,513건 2,506억 80백만원)

- '97년 12월 23일 공포된 동 조례중 부칙 제5조에 「국가유공자 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경과규정」을 신설토록 한 것은 '91년 12월 조례개정 당시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의 감면대상을 4기통 이하에서 2000cc이하로 변경하면서 4기통 이하 2000cc초과의 자동차(4대)에 대한 계속적인 감면혜택을 부칙에 명기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번 개정시 소급 신설토록 하는 것인바, 이는 '97년 12월 23일 조례개정 이전부터 면제받아 온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신뢰보장차원에서 소급 신설코자 하는 부득이한 경과조치라고 사료됨.

.....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를 삭제한다.
- 제6조제1항제1호중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을 “부동산시가표준액”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영”을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로 한다.
- 제7조제2항중 “재무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중 같은 조 제3항제3호중 “재산의 교환 및 기부채납”을 “기부채납”으로 한다.
-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0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총괄재산관리관은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를 위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 제20조를 삭제하고, 제20조 및 제20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0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88조제1항제10호, 제89조, 제90조제1항제2호, 제91조제3항, 제92조의2, 제95조제2항제27호, 제96조제10항, 제100조제2항제5호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